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 591 호

2004년 9월 17일 금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598호(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제공람
공고) 3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599호(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예정지(변경)지정
공고) 4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1호(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) 5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3호(유기동물보호공고) 6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4호(공시송달공고) 7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5호(공시송달공고) 9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6호(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) 11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7호(재결사정본공시송달공고) 12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-609호(공시송달공고) 13

고 시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-50호(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) 14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-51호(주민재건축정비사업공사완료고시(주안주공3지구) ... 16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-598호

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재공람공고

1.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내용을 반영하고자 추가 변경된 일부 환지계획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공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겠으나,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.

2004년 9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가. 사업개요

사 업 명	위 치	시 행 자	시행면적	공람내용
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	남동구 서창동 번지 일원	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	155,990㎡	공람내용에서 변경된 일부 환지

나. 추가 변경 내용 : 공동주택용지(15블럭 및 24블럭)내 환지계획 변경

다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라. 공람장소 :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453-2694)

마. 첨 부 : 환지계획 변경도서 생략

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고 제 2004-599호

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(변경) 지정 공고

1. 2004. 9. 9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4-614호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 되었기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 공고합니다.

2. 본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변경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며,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.

3.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은 대지정지공사의 완료 및 사업시행상의 장애요인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부여(환지예정지사용 허가) 합니다.

4. 환지예정지에 대한 관련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453-2692)에 비치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은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합니다.

5. 환지예정지(변경) 지정내용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되나 미수령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04년 9월 14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- 601 호

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

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,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4. 9. 3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 : 2004. 9. 16 ~ 2004. 9. 30(15일간)

2. 대상 자동차

자 동 차 등록번호	소 유 자		사건번호	이해관계인
	사용본거지	성 명		
인천80마 2773	인천.중.항동7가 27-107 비취맨손 4/1303	방 미 호	2001카단 25414	박 춘 옥 인천. 부평. 십정 1동 309-94

3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(☎453-3977)

2004. 9. 15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-603 호

유 기 동 물 보 호 공 고

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.

2004년 9월 15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04. 9. 15. ~ 2004. 10. 14.(1개월간)

2. 보호중인 유기동물

연번	종 류	성별	추정 연령	체중 (kg)	발견장소	포획일시	외형상 건강상태	비고
225	개 (시츄)	수컷	2	4	만수6동 만수초등앞	2004.9.8	양호	
226	개 (시츄)	수컷	3	4	간석4동 청실아파트	2004.9.8	양호	
227	개 (잡종)	수컷	1	4	구월1동 남부소방소	2004.9.10	양호	
218	개 (코카스페니얼)	수컷	0.2	0.5	구월1동 남인천세무소앞	2004.9.13	양호	

3. 반환청구기간 : 2004. 10. 14일까지

4. 참고 및 기타사항

-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,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남동구청에 귀속되며,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, 동물애호가 및 단체에 기증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(453-2537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- 604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1-45호(2001.10.8)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된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(중1-180호선) 하단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2004년 09 월 16 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: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
2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3. 사업예정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,81,107번지 일원
4. 공고기간 : 14일간
5. 보상계획
 - 가. 협의기간 : 2003. 12. 29 ~ 2004. 9. 21
 - 나. 보상방법 : 현금보상
 - 다. 보상금산정 :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
 - 라. 보상장소 :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(보상업무 위탁시행)
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-8
전화번호 : 032-450-8122/8133
 - 마. 보상금액 및 계약시 구비서류 : 보상장소로 문의
6. 토지 및 물건조서 : 붙임

□토지조서

소재지	지번 (종전지번)	지목	면적 (㎡)	지분	소유자	주소	관계인
만수동	80-889 (80-111)	도	49	1/1	이복래	인천시 만수동 산8	

□물건조서

소재지	지번	물건종류	구조	수량	소유자	주소	비고
만수동	81-82	가옥1(미등기) 가옥2(미등기)	홀브럭기와(다락포함) 홀브럭썬라이트	21.56㎡ 8.37㎡	미상 (김효남)	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57-16	소유자 정정 당초: 미 상 (박 순 영)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- 605 호

공시송달 공고

인천광역시고시 제2002-57('02.12.09)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인천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2004년 9 월 16 일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
2.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
3. 사업예정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번지 일원
4. 공고기간 : 2004. 9. 15 ~ 2004. 9. 28
5. 보상계획
 - 가. 협의기간 : 2003. 12. 29 ~ 2004. 9. 28
 - 나. 보상방법 : 현금보상
 - 다. 보상금산정 :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(주민추천 1인포함)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 금액
 - 라. 보상장소 :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
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-8
전화번호 : 032-450-8130~2
 - 마. 보상금액 및 계약시 구비서류 : 보상장소로 문의
6. 토지 및 물건조서 : 별첨 #1

토 지 세 목 조 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지분	소유자 (주소)	관계인
남동구 만수동	80-261	대	134	41.4/1474	김일수 (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삼산주공(아) 103-920)	
"	80-261	대	134	27.6/1474	김효중 (인천 부평구 부평동 209-5 삼일아파트 -303)	

지장물세목조서

소재지	지번	물건종류	구조	수량	소유자 (주소)	관계인 (주소)
남동구 만수동	71-131	가옥1	목재	42.88㎡	미상4 (없음)	
		가추	목재	1.96㎡		
		화장실	목재/슬레이트	1.56㎡		
		대문	목재	1식		
		담장	골합석	30.10m		
"	71-131	가옥	샌드위치판넬	42.02㎡	미상5 (없음)	
"	80-261	가옥1	블럭/슬레이트 (다락1포함)	42.50㎡	김용주 (만수동 80-261)	
		가옥2	블럭/기와	26.60㎡		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-606호

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

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, 만일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해당차량은 강제처리(폐차·말소)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통고 및 동법 제88조에 의거 사건송치(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)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04년 9월 17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04. 9. 17.~2004. 10. 1.
 2. 강제처리(강제폐차·말소 및 사건송치) : 2004. 10. 1. 이후
 3. 폐차예정장소
 - 인천폐차사업소 (인천.남동구 논현동 423-2 ☎032-814-7077)
 - (주)서울폐차사업소 (인천.남동구 고잔동 184 ☎032-442-6660)
 - 기전산업(주)폐차사업소 (인천.남동구 고잔동 726-7 ☎032-834-1577)
 4. 대상차량 : 내역별첨
 5. 문의처 :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(☎ 032-453-2751~4)
- ※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.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-607호

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

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<2차>)의 1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·송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04. 9. 17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장, 남동구청장
2. 사업의종류 :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, 독점어린이공원조성공사
3. 재결일자 : 2004. 8. 24
4. 공고기간 : 2004. 9. 17 - 10. 4
5. 재결서 정본 교부처 및 문의전화
 - 교부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
 - 전 화 : (032)453-2664
6. 공시송달 대상

사 업 의 종 류	성 명	주 소
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	김동래	인천시 연수구 연수동634 우성2차(아) 213-1202
	김금관	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15-2
독점어린이공원조성공사	신동용	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14 2층 아리랑고기부페

7. 기타

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-609호

공 시 송 달

약사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의 장기간 방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4. 09. 15.

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

1. 제 목 :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
2. 당사자
 - 가. 업 소 명 : 평안약국
 - 나. 대 표 자 : 지현옥(390909-2xxxxxx)
 - 다. 주 소 :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6(12/7)-202
 - 라. 업 종 : 약국
 - 마. 등록번호 : 제91호
3. 처분내용 : 등록취소
4. 청문사유 : 시설물멸실
5. 법적근거 : 약사법 제16조3항,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
6. 청문내역
 - 가. 기 관 명 :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
 - 나. 담당부서 : 보건행정과 의약팀(032-453-2793)
 - 다. 청문일시 : 2004. 10. 07 14:00
 - 라. 청문장소 : 남동구보건소 3층 회의실
 - 마. 청문주재자 :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
7. 기타 : 청문에 불참하거나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
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종결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4 - 50호

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

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및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(제3753호)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4년 9월 14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허가기준)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설치지역은 건축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, 도로법, 소방법,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.

② 차량의 원활한 진·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20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해야 한다.

제3조(위험물과의 거리) 위험물과의 거리는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충전시설 설치기준) 저장설비는 지하에,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거리 유지) 충전시설중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(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)으로 부터 보호시설까지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지 및 시설)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, 충전설비는 자가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임대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한다.

제7조(위해방지)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,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양도·양수 금지)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허가자가 사망, 이민,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. 단, 변경허가 대상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4-51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주안주공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준공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2004. 9. 18.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안주공3지구 재건축정비사업

2.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5번지

28,611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 : 주안주공3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자 : 정남덕)

풍림산업주식회사 (대표자 : 이필승)

○ 주소 : 인천 남동구 간석동 529-1

서울 강남구 삼성동 76-86

4. 준공인가내역

구 분	인가내역	비 고
대지면적(㎡)	28,611	
건축면적(㎡)	5,502.044	
연 면 적(㎡)	126,338.19	
건 폐 율(%)	19.23	
용 적 율(%)	342.67	
주차대수(대)	920	
세 대 수	922	